





보도참고자료

• 따뜻한 금융

배포 시부터 보도가능

• 튼튼한 금융

• 미래창조 금융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	
책 임 자	이동훈 보험과장(2156-9830)	담 당 자	조성조 사무관(2156-9841)
배 포 일	2016.03.04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매

제 목 :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

-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시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□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6.3.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, 일부 언론 등에서 동법이 **보험계약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음을 **지적**
- □ 동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, 상해·살인 등 **강력범죄와 연계** 되어 **조직화·흉포화**되는 **보험사기방지에 기여**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
- 그럼에도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,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·야당 및 정부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하였음
- □ 논의 결과, 동법 제5조제2항을 신설^{*}하여 **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**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,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
 - *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□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**보험금 지급지연 등에**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음



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c.go.kr

